

예산총칙

제1조 : 2012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28,679,623	9,860,389
1. 일반회계	314,086,127	9,422,584
2. 특별회계	14,593,496	437,805
의료보호기금	844,922	25,348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608,059	18,242
주차장	11,316,363	339,491
주거환경개선사업	172,640	5,17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65,241	19,957
기반시설	89,818	2,695
지하수관리	285,766	8,573
재정비축진	610,687	18,321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800,000천원이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47,237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 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

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
의회에 보고한다.